

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변경, 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 보고서

의안 번호	328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9. 3. 9.

제출자 : 산업건설위원장

1. 심사경위

- 제출일시 및 제출자 : 2009. 2. 27. (남양주시장)
- 회부일자 : 2009. 3. 2.
- 상정일자 : 2009. 3. 9.(제16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)
- 의결일자 : 2009. 3. 9.(제16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)

2. 제안설명요지 (도시국장 이광복)

가. 제안이유

-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변경, 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안에 대하여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.

나. 주요골자

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

-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면적(m ²)		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
합계	60,623.0	-	60,623.0	자연녹지 39,342.0m ² 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
주거지역	제1종 일반주거지역	4,844.0	4,844.0	
	제2종 일반주거지역	-	증) 39,342.0	
녹지지역	자연녹지지역	55,779.0	감) 39,342.0	16,437.0

○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 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용적률 (%)	변경사유
		기정	변경			
가	남양주시 평내동 191번지 일원	자연녹지 지역	제2종 일반주거 지역	39,342	200% 이하	평내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라 공동주택용지용지 확보 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추성운)

- ① 사업부지의 주 출입구가 국도46호선을 이용하여 중로1-30호선을 경유하고 도시계획도로 3-12호선을 개설하여 출입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도로 3-11호선을 개설하는 방안 등 사전에 주 출입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 출입구를 확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,
- ② 향후 사업 시행 시 소음 분진 공사차량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방지대책과 국도 46호선의 교통량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시 공사차량 진·출입 도로를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.

4. 심사 중 논의된 의견

- 사업부지의 주 출입구가 국도46호선을 이용하여 중로 1-30호선을 경유하고 도시계획도로 3-12호 선을 개설하여 출입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도로 3-11호선을 개설하는 방안 등 사전에 주 출입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 출입구를 확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과

- 향후 사업 시행 시 소음 분진 공사차량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방지대책과 국도 46호선의 교통량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시 공사차량 진출입 도로는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견과
- 단지 내 포함되어 있는 구거의 유로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구거를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5. 심사결과 : 의견 제시

붙임 : 의견서 1부. 끝.

의견서

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변경, 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남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.

다 음

1. 사업부지의 주 출입구가 국도46호선을 이용하여 종로 1-30호선을 경유하고 도시계획도로 3-12호선을 개설하여 출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도로 3-11호선을 개설하는 방안 등 사전에 주 출입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 출입구를 확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.
2. 향후 사업 시행 시 소음 분진 공사차량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방지대책과 국도 46호선의 교통량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시 공사차량 진·출입 도로는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함.
3. 단지 내 포함되어 있는 구거의 유로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구거를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.